

(붙임 3)
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 : 김 * * (68.07.02) 연 락 처 : 010-7***-2***

주 소 : (02637)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나길 1* ***호

항상 저희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고객님께서 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아래 여신이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①항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 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,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1. 대상여신

(기준일자 : 2026.07.14.)

채무자	계좌(카드)번호	대출일자	만기일자	대출잔액(원)	연체금액(원)			연체시작일
김 * *	061-5910 -81**-**	2022.12.13	2027.12.13	7,559,511	미 납	원금	1,907,621	2025.02.14.
					원리금	이자	177,351	
					연체이자		28,683	
					비 용		0	
					합 계		2,113,655	

※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6.07.28.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분할상환 대출원리금 미납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대출금의 상환 의무, 연체이자 부담,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등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/방법	동서울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(https://dongseoul.nonghyup.com)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(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,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인하, 이자감면, 담보권 실행 유예 등)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	소속	전화번호	사무실 주소
정석재	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작안독지점	02-2244-4247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93 2층 금융접폰

2026년 7월 14일

발신인 : 동서울농협 장안동지점 (직인생략)